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6년 3월 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2026년 3월 12일 회부
- 상정일자: 제31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6년 3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담당관)

#### 가. 제안이유

-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한시정원 : 현안사업추진과장(5급), 보상팀장(6급)
  - 1) 존속기한 : 2024. 1. 1. ~ 2026. 6. 30.(2년 6개월)
- 기준인력 반영 : 13명
  - 1) 통합돌봄 : 9명(읍면별 1명, 보건의료원 1명)

2) 재난안전상황실 : 3명(안전교통과)

3) 자살예방 : 1명(보건의료원)

○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안 별표3)

1)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776	396	18	191	21	150
개정	776	387	18	192	21	158
증감	-	△9	-	+1	-	+8

2) 직급별 정원조정

구분	계	특수경력직		경력직									
		정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현행	776	1	775	1	4	36	184	214	196	110	2	4	24
개정	776	1	775	1	4	35	183	213	201	109	2	4	23
증감	-	-	-	-	-	△1	△1	△1	+5	△1	-	-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경숙)

※ 검토보고서 전문 ..... [붙임 1]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사항: 「없음」

- 붙임 1.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2.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평창군수
- 제안일자 : 2026. 03. 03.
- 회부일자 : 2026. 03. 12.
- 상정일자 : 2026. 03. 13.

### 2. 제안이유

-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한시정원 : 현안사업추진과장(5급), 보상팀장(6급)
  - 1) 존속기한 : 2024. 1. 1. ~ 2026. 6. 30.(2년 6개월)
- 기준인력 반영 : 13명
  - 1) 통합돌봄 : 9명(읍면별 1명, 보건의료원 1명)
  - 2) 재난안전상황실 : 3명(안전교통과)
  - 3) 자살예방 : 1명(보건의료원)

○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안 별표3)

1)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776	396	18	191	21	150
개정	776	387	18	192	21	158
증감	-	△9	-	+1	-	+8

2) 직급별 정원조정

구분	계	특수경력직		경력직									
		정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현행	776	1	775	1	4	36	184	214	196	110	2	4	24
개정	776	1	775	1	4	35	183	213	201	109	2	4	23
증감	-	-	-	-	-	△1	△1	△1	+5	△1	-	-	△1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 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정원을 둘 수 있고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0조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입법의 취지

-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정비 및 공무원 정원 조정

##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별표 3의 총 정원은 변동없이 유지하면서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함. 일반직의 경우 745명에서 746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직급별로는 5급 정원을 36명에서 35명으로 1명 감하고 6급 이하 정원을 704명에서 706명으로 2명 증원함. 또한 지도직 정원은 26명에서 25명으로 1명 감축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지도사 정원을 24명에서 23명으로 1명 감축함.

## 5. 종합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해당 정원을 정비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한시정원인 현안사업추진과장(5급) 및 보상팀장(6급)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원 조정과 함께 통합돌봄, 재난안전상황실, 자살

예방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③ ~ ⑥ (생략)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② ~ ⑤ (생략)**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3. 10.>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55
----------	-----

제출년월일 : 2026. 3.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한시정원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 및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한시정원 : 현안사업추진과장(5급), 보상팀장(6급)

1) 존속기한 : 2024. 1. 1. ~ 2026. 6. 30.(2년 6개월)

나. 기준인력 반영 : 13명

1) 통합돌봄 : 9명(읍면별 1명, 보건의료원 1명)

2) 재난안전상황실 : 3명(안전교통과)

3) 자살예방 : 1명(보건의료원)

다. 평창군 정원관리기관·직급별 정원(안 별표3)

1)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구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현행	776	396	18	191	21	150
개정	776	387	18	192	21	158
증감	-	△9	-	+1	-	+8

## 2) 직급별 정원조정

구분	계	특수경력직		경력직									
		정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연구사	지도사
현행	776	1	775	1	4	36	184	214	196	110	2	4	24
개정	776	1	775	1	4	35	183	213	201	109	2	4	23
증감	-	-	-	-	-	△1	△1	△1	+5	△1	-	-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1224(2026. 1. 16.)호]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1224(2026. 1. 16.)호]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가족복지과-2558(2026. 1. 16.)호]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2004(2026. 1. 29.)호]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2568(2026. 2. 9.)호]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6	77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6	746				
3급	1	1				
4급	4	3		1		
4~5급						
5급	35	18	2	6	1	8
6급 이하	706	706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23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b>[별표 3]</b></p> <p style="text-align: center;"><b>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사무과</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776</td> <td colspan="5">776</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745</td> <td colspan="5">745</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4~5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6</td> <td>19</td> <td>2</td> <td>6</td> <td>1</td> <td>8</td> </tr> <tr> <td>6급 이하</td> <td>704</td> <td colspan="5">704</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4</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 colspan="5">4</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6</td> <td colspan="5">26</td> </tr> <tr> <td>지도관</td> <td>2</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4</td> <td colspan="5">24</td> </tr> <tr> <td>별정직 계</td> <td>0</td> <td colspan="5">0</td> </tr> <tr> <td>6급상당</td> <td></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6	77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5	745					3급	1	1					4급	4	3		1			4~5급							5급	36	19	2	6	1	8	6급 이하	704	704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2		2				지도사	24	24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p><b>[별표 3]</b></p> <p style="text-align: center;"><b>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회사무과</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읍·면</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776</td> <td colspan="5">776</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5">1</td> </tr> <tr> <td>군 수</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746</td> <td colspan="5">746</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4~5급</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35</td> <td>18</td> <td>2</td> <td>6</td> <td>1</td> <td>8</td> </tr> <tr> <td>6급 이하</td> <td>706</td> <td colspan="5">706</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직 계</td> <td>4</td> <td colspan="5">4</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 colspan="5"></td> </tr> <tr> <td>연구사</td> <td>4</td> <td colspan="5">4</td> </tr> <tr> <td>지도직 계</td> <td>25</td> <td colspan="5">25</td> </tr> <tr> <td>지도관</td> <td>2</td> <td></td> <td>2</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23</td> <td colspan="5">23</td> </tr> <tr> <td>별정직 계</td> <td>0</td> <td colspan="5">0</td> </tr> <tr> <td>6급상당</td> <td></td> <td colspan="5"></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6	77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6	746					3급	1	1					4급	4	3		1			4~5급							5급	35	18	2	6	1	8	6급 이하	706	706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23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6	77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5	745																																																																																																																																																																																																																																																																									
3급	1	1																																																																																																																																																																																																																																																																									
4급	4	3		1																																																																																																																																																																																																																																																																							
4~5급																																																																																																																																																																																																																																																																											
5급	36	19	2	6	1	8																																																																																																																																																																																																																																																																					
6급 이하	704	704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6	26																																																																																																																																																																																																																																																																									
지도관	2		2																																																																																																																																																																																																																																																																								
지도사	24	24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6	776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46	746																																																																																																																																																																																																																																																																									
3급	1	1																																																																																																																																																																																																																																																																									
4급	4	3		1																																																																																																																																																																																																																																																																							
4~5급																																																																																																																																																																																																																																																																											
5급	35	18	2	6	1	8																																																																																																																																																																																																																																																																					
6급 이하	706	706																																																																																																																																																																																																																																																																									
전문경력관 소계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5	25																																																																																																																																																																																																																																																																									
지도관	2		2																																																																																																																																																																																																																																																																								
지도사	23	23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 관계법령 발취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한시정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한시기구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거나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부터 그 정원은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의 정수와 직급별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5. (생략)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210